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5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황철규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2022년 8월 재개장에 의해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광화문 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하여 장소 정의를 재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공익목적의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①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내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하여 장소 정의를 재규정하고,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 긴급 사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